

전자상거래상의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Domain Name Disputes in Electronic Commerce

배정환(Jung-Han Bae)* · 김상도(Sang-Do Kim)**

요 약 (ABSTRACT)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더불어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통한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와 최근 들어 또 다른 대안으로 등장한 ICANN의 UDRP와 그 규칙을 살펴보고 관련 분쟁해결기구들(Providers)을 통한 분쟁사례를 고찰하여 국제적인 도메인 네임 분쟁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 : 도메인 네임, ICANN, 전자상거래, UDRP, .COM 분쟁

목	차
I. 서 론	1. 중재·조정을 통한 도메인 분쟁사례 (1) WIPO 중재·조정센터를 통한 분쟁사례 (2) 전미중재원을 통한 분쟁사례 (3) e-Resolution을 통한 분쟁사례
II.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인 분쟁해결 1. 도메인 네임 분쟁원인과 유형 (1) 분쟁원인 (2) 분쟁유형 2.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인 분쟁해결 정책 (1) 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1) ICANN 2) 관련정책과 규칙 (2)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관한 정책 (3) WIPO 권고안	2. 법원을 통한 도메인 분쟁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미국)
III.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IV.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의 시사점 1. 국내판례 분석 2. 미국판례 분석 3. 중재·조정 사례분석 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현재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하

* 영남대학교 통상 및 경제학부 부교수

**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3학기

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기업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기업활동이 기존의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나 소비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도메인 네임이다. 원래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 도메인 네임은 정보기술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상 기업이나 상품의 식별 기능도 부가적으로 갖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business.com이 750만 달러로 거래¹⁾되는 등 도메인 네임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고 동시에 전세계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도메인 네임이 기업의 인터넷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무형자산 또는 신지적재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메인 네임의 잠재적인 재산가치가 커짐에 따라 현재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메인 네임 선점은 도메인 네임의 유일성과 상표권의 속지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점자와 기존의 동일한 상표 및 서비스권자 사이의 권리보호에 있어 상당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유명기업의 상표권을 도메인 네임으로 먼저 선점하여 상표권자에게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ICAN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등에서는 이러한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쟁해결제도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²⁾

지금까지의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은 대부분이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9년 말에 ICANN이 WIPO 중재·조정센터, e-Resolution,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 NAF)에 도메인 네임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세계적인 추세가 중재·조정을 통한 빠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어, ICANN의 Provider들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기간은 약 45-50일이 소요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도메인 네임 분쟁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 Krnic)산하에 도메인 네임 분쟁협의회가 발족되어 각국의 법원과 중재·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이 관련된 ICANN Provider의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에서 5건 모두가 도메인을 상대

1) 전자신문, 2000년 5월 29일.

2) Marc Brown, "Know your rights : Don't pay ransom to a cybersquatter." *The Business Journal*, March 24, 2000, v17. p. 67.

방에게 이전하도록 행정패널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처럼 내국인들은 아직까지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법원을 통한 도메인 네임 분쟁을 국내외별로 살펴보고 또한 다른 대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국제적인 중재·조정기구의 분쟁해결정책과 규칙을 토대로 이들 기구들을 통한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적인 도메인 네임분쟁에 있어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인 분쟁해결정책

1. 도메인 네임 분쟁원인과 유형

(1) 분쟁원인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네임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으로는 첫째, 닷컴(.com) 도메인 주소의 등록 및 관리는 특정국가기관이나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정보망센터(Internic)의 산하에 있는 NSI(Network Solution Inc.)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분쟁당사자들을 구속할 만한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데는 그러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예컨대 도메인 네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의 보유 및 사용여부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선등록원칙(First Come, first served)에 의해 도메인 등록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도메인 네임을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국제정보망센터는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1995년 말부터 미국 이외의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도 닷컴(.com)이라는 도메인 등록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도메인 네임 분쟁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³⁾

(2) 분쟁유형

도메인 네임 분쟁의 대부분은 닷컴(.com)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도메인 네임의 등록자에 대하여 기존의 그와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대기업의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는 경우다. 최근의 사례로 유명한 증권거래회사인 모건스탠리디위터(Morgan Stanley Dean Witter)와 왕(Wong)씨 부자 사이에 발생한 'www.msdownline.com'이란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이었다.⁴⁾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17세의 아이반 왕

3) <http://jus.snu.ac.kr/~sjjong> 참조.

과 그 아버지는 자기들이 모건스탠리보다 앞서 도메인 네임을 선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했는데도 대기업이 뒤늦게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은 벌써 부자가 이미 50개 이상의 미국 대기업의 이름을 자기들 것으로 등록한 것을 들어 이들이 남의 이름을 먼저 등록한 뒤 많은 돈을 받고 도메인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둘째, 경쟁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경쟁회사의 이름을 자기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유명기업의 도메인 네임을 먼저 등록하여 그 기업에게 고액을 받고 매도하는 신종사업이 등장할 정도로 도메인 네임을 둘러싼 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는 비록 도메인 네임의 등록이 타인에 의해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악의로 도용한 경우는 기존 상표권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미국에서 토펜이란 사람이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큰 돈을 벌 계획으로 파나비전(panavision.com)과 같은 240개의 대기업 상표를 자기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⁶⁾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각 도메인당 수 만 달러를 받으려고 흥정을 했는데, 해당 기업들이 협상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무상으로 반환 받았다.⁷⁾

2. 도메인 네임의 국제적인 분쟁해결정책

(1) 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제도

1) 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미국의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하도록 공식적으로 선정된 비영리 기구이다. 현재 미국의 상무성과 인터넷주소할당단체(IANA :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ICANN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2000년 9월 30일이면 미국 정부는 인터넷 주소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줄 예정이다. 루트서버는 공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에 관한 국제적 정책 결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의 기업들이 이 기구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기구의 결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리고 ICANN은 1999년 12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WIPO 중재·조정센터와

4) <http://www.djc.com/news/tech/10059864.html>

5) 현재 모건스탠리 온라인이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6) <http://www.jmls.edu/cyber/cases/panavis.html>

7) <http://nara.smipc.or.kr/200001/08/02/01-01.htm>

8) <http://www.icann.org> 참조.

e-Resolution, 전미중재원을 중재·조정을 통한 도메인 분쟁해결기관(Provider)으로 임명하였으며, 2000년 3월에 CPR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⁹⁾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구들을 통한 분쟁해결이 많아짐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분쟁해결기관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ICANN의 UDRP에 의해 분쟁처리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분쟁처리 현황 통계(2000년 6월 8일 현재)

진행상황	사건 수	해당도메인
계류 중	398	576
법정소송을 위한 판결유보	1	1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한 판결유보	14	20
총 미결 사건 수	413	597
도메인명 이전	338	497
도메인명 말소	8	9
도메인명 말소/이전	1	4
피고 승소	97	118
부분 승소	4	40
결정에 의한 처분 수	448	668
이전화해	6	6
이전없는 화해	0	0
무조건 화해	7	7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	0	0
기각(Dismissal without prejudice)	27	42
각하	8	10
결정없는 처분	48	65
총 사건 수(재심을 위해 심리종결된 이외)	909	1330
재심을 위한 심리종결 수	10	11

출처 : <http://www.icann.org/udrp/proceedings-stat.htm>

위의 분쟁처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909건의 사건 가운데 단 1건만이 법정소송을 위해 판정을 유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에 있어 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 정책과 규칙

①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UDRP는 1999년 10월 24일에 ICANN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 관련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¹⁰⁾ 분쟁해결절

9) 이 단체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5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아직까지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사건은 없다.

10) UDRP Paragraph 1.

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UDRP paragraph 4에 규정되어 있는 데, 이 절차는 UDRP 규칙과 행정적인 분쟁해결 서비스 기관들(예 : WIPO 중재조정센터, e-Resolution, NAF)의 보완규칙에 따른다.

UDRP는 9개의 paragraph(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이 중에서 도메인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i) 도메인 등록 사전진술의 진실성

도메인을 등록할 때 당사자는 등록협정에서 언급한 모든 진술이 정확하고 관련 도메인 네임 등록이 어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악의의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용 가능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해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¹²⁾

ii) 강제적 행정절차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도메인의 이전과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첫째, 도메인이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둘째,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권한이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고, 셋째,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때¹³⁾이다.

위의 각 조항의 문장이 '하고', '없고' 로 끝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위 세 조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위의 첫째 요건은 문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유사하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요건에 따라 피신청인이 관련 도메인 네임에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와 사용할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¹⁴⁾ 상품과 서비스를 악의가 아닌 선의로 제공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행하고 있는 경우, 상표나 서비스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관련 도메인 네임으로 인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유발하거나 관련 상표나 서비스표를 손상시킴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이 도메인 네임을 비상업적 또는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셋째 요건에서는 패널이 다음의 경우에 악의로 도메인 네임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련 도메인 네임의 등록에 든 비용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쟁자에게 도메인 네임을 판매, 임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 이전을 위하여 등록하거나 취득한 경우,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는 피신청인이 상표나 서비스표의 원소유자가 관련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 피신청인이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출처, 자회사 관계 등에 있어서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 가능성을 유발시키므로 피신청인의 웹사

11) <http://www.icann.org/udrp/udrp-policy-24oct99.htm> 참조.

12) UDRP Paragraph 2.

13) UDRP Paragraph 4.a.

14) UDRP Paragraph 4.c.

이트로 인터넷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고의로 등록한 경우¹⁵⁾이다.

iii) 행정 패널

신청인은 ICANN에 의해 승인된 분쟁해결단체(Provider)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 해결을 맡길 수 있으며,¹⁶⁾ 또한 신청인이 1인 또는 3인의 행정패널을 지명하게 하고 있고¹⁷⁾,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1인의 패널을 지정한 경우에 그 비용은 신청인이 모두 부담하고,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으로 3인의 패널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에 공평하게 부담한다.¹⁸⁾

마지막으로 행정패널에 의한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는 행정절차시작 또는 완료 후 법원이나 중재 또는 적절한 다른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¹⁹⁾

②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규칙은 UDRP와 함께 1999년 10월 24일 ICANN에 의해 UDRP하의 분쟁해결의 행정절차를 다루도록 채택되었으며, 신청서(complaint)의 피신청인에게의 전달방법, 내용, 통지당사자, 피신청인의 응답기간과 그 내용과 방법, 패널결정과 시기, 당사자들과 패널사이의 의사전달, 패널의 권한, 행정절차상의 언어, 추가진술, 패널결정과 당사자들에게 패널결정의 전달방법, 법원절차의 효과, 수수료 및 Provider와 패널의 면책 등을 다루고 있다.²⁰⁾

③ 분쟁해결기구(Provider)의 보완규칙들

분쟁해결단체의 보완규칙들은 ICANN의 UDRP 규칙을 보완하는데 사용되어진다. 이런 보완규칙들은 UDRP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분쟁해결기관(Provider)이 어느 정도 자의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한 것이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Provider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서는 그 서류의 형식적인 일치성을 검토하여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약 제출양식에 있어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신청인은 그 결함을 교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절차는 피신청인의 응답(Response)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이외에 추가적으로 서면진술 및 관련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추가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의사전달은 패널중재인이 아닌 Provider하의 관련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15) UDRP Paragraph 4.b.

16) UDRP Paragraph 4.d.

17) UDRP Paragraph 4.e.

18) UDRP Paragraph 4.f.

19) UDRP Paragraph 5, 8.

20) 이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ann.org/udrp/udrp-rules-24oct99.htm> 참조.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의 행정절차에 있어 패널²¹⁾을 지명하게 되며 분쟁에 관련된 도메인 수와 패널의 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패널들은 관련 사건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만약 공정성에 있어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들은 패널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Provider가 인정하는 사망, 무능력, 거부 또는 사임의 경우에 패널을 신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행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전에 언제라도 신청서를 양자간에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신청서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포기의 표시는 행정절차를 종료 시키게 된다. 어떠한 당사자라도 분쟁해결의 행정절차에 있어 패널, Provider, 관련 기관을 매수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완규칙들은 언제든지 변경되어질 수 있다.

(2) InterNIC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관한 정책

InterNIC의 기본적인 도메인 네임등록 원칙은 선착순(first-come, first served)이다. 그러나 상표권과 충돌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특히 법원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등록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기존의 원칙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InterNIC은 도메인 네임 등록 자체가 어떤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도메인 네임 분쟁 정책(Domain Name Dispute Policy)'을 1998년 2월 25일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3) WIPO 권고안

1998년 WIPO는 미국의 제안과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도메인 네임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 4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록 담당기관들은 gTLDs²²⁾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등록시 정확하고 믿을 만한 등록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등록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등록된 도메인 네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2) ICANN은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되, 그 대상은 소위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으로 불리는 악의적 도메인 네임 등록에 한 한다. 이 절차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유명상표(famous and well-known marks)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혹은 전체 gTLDs에

21) 각 Provider의 패널리스트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의 변호사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단 2명의 국내 변호사가 패널리스트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al Top Level Domain)으로 com, org, net 가 이에 속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최상위 도메인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cTLD)이 있다. 약 190여개가 존재한다.

유명상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하게 변형시킨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그것이 정당한 사용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1. 중재·조정을 통한 도메인 분쟁사례

(1) WIPO 중재·조정센터를 통한 분쟁사례

1) worldwrestlingfederation.com

신청인은 worldwrestlingfederation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의 권리자인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이며, 피신청인인 도메인 네임 등록자(Michael Bosman)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인 신청인에게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판매하려 한 사실이 있다. 행정패널은 위의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이 UDRP paragraph 4(a)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중재·조정을 통해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려는 최초의 사례였다.

2) worldcup2002.com 의 14개 도메인²³⁾

신청인은 world cup의 상표권자인 ISL Marketing AG와 FIFA이고, 그들은 피신청인인 한국의 정지영씨와 관련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불명확한 다수의 기관에 대해 관련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UDRP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행정패널은 UDRP paragraph 4(a)의 첫째 요건에 따라 (1)-(13) 도메인 네임은 FIFA의 world cup 상표를 확대 또는 축소한 경우로 관련 상표와 혼동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14)-(15) 도메인 네임은 관련 없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둘째 요건에 따라 정지영씨의 웹사이트가 FIFA의 공식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셋째 요건에 따라서 패널은 15개의 도메인 네임이 같은 날 그리고 2주 이내에 모두 등록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행정패널은 NSI가 (1)-(13)의 도메인 네임을 FIFA에 이전하도록 명령하였다.

23) (1) worldcup2002.com (2) worldcup2002.net (3) worldcup2002.org (4) worldcup02.org
(5) worldcup10.com (6) 2002worldcup.org (7) worldcup02.net (8) 2002worldcup.net
(9) worldcup2006.org (10) worldcup2010.com (11) worldcup2010.org
(12) worldcup2010.net (13) 2006worldcup.org (14) wc2002.com (15) wc02.com

3) toaic.net

이 사건은 신청인인 toaic의 상표권자인 TOEIC 사가 관련 도메인 등록자인 Netkorea사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요구한 경우이다. 행정패널은 UDRP paragraph 4(a)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첫째, 관련 도메인 네임이 toaic 상표와 동일하고, 둘째, 피신청인이 한국에서 toaic에 대한 어떤 상표등록이나 등록신청한 적이 없으며 도메인 등록이전에 이미 이 상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셋째, 피신청인의 서면진술에서 신청인의 인터넷 사업에서 관련 도메인 네임의 긴급한 필요성과 적절한 가격, 최소 비용 등을 거론한 점을 들어 악의의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위의 사항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toaic.net의 도메인 네임 등록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2) 전미중재원을 통한 분쟁사례

1) icqsms.com

신청인인 America Online, Inc. 는 ICQ, SMS 등의 상표 및 서비스표 권리자이다. 피신청인인 도메인 네임 등록인(QTR Corporation)은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바 없고, 도메인 네임 등록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처도 허위로 기재하였고, 도메인 네임을 판매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행정패널은 이런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이 UDRP paragraph 4(a)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

2) superpawn.com

ASuperpawn@의 상표권자인 Camco가 피신청인인 PAWNBROKERS SUPER-STORE의 도메인 네임 등록이 UDRP paragraph 4(a)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등록 3년 전에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그러한 도메인 네임이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으므로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신청인은 둘째, 셋째 요건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도메인 네임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하였다.

(3) e-Resolution을 통한 분쟁사례

1) biofield.com

biofield 상표권자인 신청인(BIOFIELD CORP.)이 웹사이트 채구축 기간 중에 재등록을 놓친 사이에 관련 도메인 네임이 한국의 권재현씨에 의해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과 접촉하였으나 도메인 네임의 이전을 거절하자 행정절차에 의뢰하게 된 사례이다. 패널은 신청인이 UDRP paragraph 4(a)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것으로 판단함. 특히 세 번째 요건에 있어서 권재현씨가 도메인 네임 등록에 든 현금비용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메인 네임을 매도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악의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행정패널은 분쟁의 도메인 네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판정하였다.

2) fido.com

신청인인 MICROCELL SOLUTIONS INC는 fido의 상표권자이다. 행정패널은 피신청인 (B-SEEN DESIGN GROUP INC)이 관련 도메인 네임을 장래의 검색엔진으로 사용할 것이고 더욱 향상된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어떤 사전조치를 취했으며, 신청인의 금전적인 판매요구에도 위와 같은 취지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여 관련 도메인 네임에 있어 피신청인이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를 가지며 도메인 등록과 사용에 있어 악의가 없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신청인이 UDRP paragraph 4(a)의 세 가지 요건 중 둘째와 셋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메인 네임 fido.com을 피신청인이 계속 사용하도록 판정하였다.

2. 법원을 통한 도메인 분쟁사례

(1) 국내사례

1) 샤넬(Chanel) 사건²⁴⁾

원고 샤넬은 “CHANEL” 또는 “샤넬”이라는 상표로 화장품, 의류를 비롯하여 악세서리, 핸드백 등 수많은 패션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프랑스의 법인이고, 샤넬 유한회사는 원고 샤넬로부터 위의 물품들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한국내 자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998년 12월 30일 chanel.co.kr 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그 홈페이지 여러 곳에서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페르몬 향수, 콘돔 등을 비롯한 각종 성관련 상품과 란제리 등의 목록을 게시하여 판매하였는 바, 특히 “페르몬 향수”의 광고에는 “프랑스 직수입품”이라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도메인 네임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관련 상표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지 저명한 상표임을 들어 영업주체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결, 또한 Kmic의 선점수 선처리 원칙은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판정하여 사건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 등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표보호에 있어 너무 광범위하게 도메인 네임을 금지시킨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 도메인 네임은 현재 프랑스의 샤넬사와 관련없는 사이트라는 주지문과 함께 DARIN KOREA 라는 상호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2) 하이마트 사건²⁵⁾

신청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는 1989년경부터 “하이마트(HI-MART)”라는 상호로 가

24) 서울지방법원 99가합41812

25) 서울지방법원 99가합2819

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대표이사인 송영석 개인명의로 Knic에 "http://www.himart.co.kr" 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전자주문 방식에 의한 가전제품 등의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 12월 10일에는 위 도메인 네임을 피신청인 로마산업개발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으며,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그 홈페이지 및 하위 사이트 화면의 좌측 상단에 "HIMART" 라는 표시를 하여 두고 있으며, 위 웹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전자우편 주소로 "webmaster@himart.co.kr"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하이마트 도메인 네임 등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위 하이마트 상호는 가전제품 유통에 있어 그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신청인의 가전제품 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국내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co.kr"로 마쳐지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면서 그 앞부분에, 광고의 목적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상호나 상표를 연상하며 쉽게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영문자로 표시한 상호 내지 상표 등을 부가하여 도메인 네임을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위 도메인 네임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신청인의 영업과 동일한 가전제품 판매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에 "Himart"라는 표시가 계속 나타나 소비자들이 하여금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행위들은 신청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도메인을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도메인네임이 분쟁으로 인해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주지문과 함께 피신청인은 (주)쇼핑코리아닷컴으로 상호를 바꾸어 www.shoppingkorea.co.kr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3)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Pfizer Products Inc.) 사건²⁶⁾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는 화이자 코오퍼레이션으로부터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Viagra" 및 "비아그라" 문자상표(등록번호 제0387168호 및 제0387169호)와 항생물질제, 동물용약제, 구충제, 항관절염제제, 항박테리아제제, 심장병치료제, 항당뇨병제제, 호흡기관용약제, 안정제, 비타민제, 소염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PFIZER" 문자상표(등록번호 제0003287호)를 각 이전받아 등록하였고, 원고 화이자 제약주식회사는 원고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로부터 위 각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아 한국 내에서 관련 상품을 독점수입,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서모씨로부터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viagra"를 사용하여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이전받아 인터넷상에서 생츠킷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들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에 "viagra" "Pfizer"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의 비아그라(viagra)의 효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

26)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9가합8863

뿐이고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원고측의 항의를 받고 즉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피고들이 판매하려고 한 생츠킴 등의 건강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이 상표와 동일한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아그라” “viagra”는 다른 상표들에 비해 그 상표의 개별화 기능이 무척 강하여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외국계의 제약회사가 생츠킴, 칩수 등의 재래의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 및 영업주체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실을 모두 기각하였다. 현재 피고가 분쟁에 관련된 문자를 위의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에서 완전히 삭제한 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국외 사례(미국)

1) Intermatic.Inc. v. Toepen 사건²⁷⁾

원고 Intermatic사는 컴퓨터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로서 1941년부터 자사제품에 INTERMATIC의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이를 연방상표로서 등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995년 12월, NSI에 intermatic.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이트에는 피고가 거주하는 지도만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도메인 네임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본 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상표의 혼동가능성과 상표 희석화 문제²⁸⁾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첫 번째 문제에 있어 피고의 웹사이트에서는 단지 거리의 지도만 있을 뿐 원고의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웹사이트 개설시의 내용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에서는 현재 원고가 INTERMATIC을 도메인 네임으로 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넷 상에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희석화된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고는 앞으로 원고가 intermatic.com의 도메인 네임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의 중지명령을 하였다. 현재 원고가 이 도메인 네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 The Hearst Corporation v. Ari Goldberger, Esq 사건²⁹⁾

Esquire 잡지를 발행하는 The Hearst사가 Ari Goldberger가 등록한 도메인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률서비스 홈페이지가 Esquire 잡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27) 947 F. Supp. 1227 (N.D. III. 1996)

28) 1995년에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이 1995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 하에서는 유명상표의 경우 취급품목의 혼동가능성에 상관없이 상표의 가치를 하락 또는 희석화시키는 것에 대해 보호를 해준다.

29) <http://www.jmls.edu/cyber/cases/esquire1.html>

하지만 법원은 esq.wire 또는 esquire의 도메인이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도메인이 Esquire 잡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름이 서비스 마크, 상표권, e-mail주소로서 사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고 인정하였다. 그 대신 피고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상에 있는 내용이 법률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Esquire 잡지의 상징물이나 표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Heart 사에 대해서는 골드버거씨의 사용영역외의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이용을 위해 ESQUIRE, ESQ.을 사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여 피고의 도메인명 사용을 일부 제한 시켰다. 이 도메인 네임은 도메인 네임분쟁과 기타 다른 인터넷과 상표권 관련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으로 현재 골드버거씨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3) MTV Network v. Curry 사건³⁰⁾

음악방송인 MTV의 전 비디오자키가 mtv.com을 자신의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연예계의 동정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출연을 중지하자 MTV측에서 도메인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분쟁이 야기되었고, 피고인 Adam Curry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Curry에 의하면 그가 mtv.com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전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에 걸쳐 MTVN의 집행부와 수많은 논의를 거쳐 그들의 반대도 없고 참여의사도 없어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MTVN은 1994년 1월 19일 Curry에게 mtv.com의 주소를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였다. 피고는 MTV사가 쌍방향 인터넷서비스를 개발한 자신의 노력을 그냥 손쉽게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원고측이 도메인개발에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또 그에 따라 상당기간 도메인을 사용해왔고, 고객도 상당수 확보되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상표권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판결 전에 도메인명을 포기한 경우다. 현재 MTVN에서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4) whitehouse 사건³¹⁾

Dan Parisi가 등록한 whitehouse.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백악관³²⁾ 주소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지어 네티즌에게 오도된 방문을 유도하므로 윤리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백악관측이 항의를 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된 사례이다. Parisi는 처음에 백악관을 조롱하는 순수한 회화와 논평(parody and commentary) 사이트를 지향했으나 유료 음란사이트로 갑자기 콘텐츠를 바꾸었다. 이에 백악관은 상업적으로 사용된 "이미지들과 어휘들이 백악관,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백악관의 오랜 정책에 위반된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인터넷이용자들 사이에 논쟁을 유발시켰다. Parisi는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The White House"는 상표권이 주어진 이름

30) 867 F. Supp. 202 (S.D.N.Y. 1994). <http://www.jmls.edu/cyber/cases/mtv.txt>

31) 한국전산원,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1998. 4.

32) www.whitehouse.gov

도 아니고, 클린턴 가족은 공적 인물들이며, S&M Parody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안된다고 항변하였다. 더욱이 그의 사이트는 명백한 주의문(disclaimer)을 만들어 놓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반론을 개진하였다. 결국 백악관 이미지를 변형한 상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워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이 사이트는 상업적인 유료 음란사이트로 계속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이 taiwan.com³³⁾을 등록해 대만의 공식국가명으로 도메인 네임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사례와 한국의 황의석씨가 독도의 일본식 영문표기인 takeshima.com³⁴⁾을 미리 등록해 일본의 영토주장을 원천봉쇄한 사례처럼 도메인 네임분쟁이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된 경우도 있다.

IV.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의 시사점

1. 국내판례 분석

국내판례를 살펴보면 도메인 네임 분쟁을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등록상표 또는 유명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기관에 단순히 등록하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chanel 사건에서와 같이 등록상표의 경우 그 효력이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까지 미치므로 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으로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셋째, 하이마트, chanel 사건에서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종상품에까지 미치므로 주지·저명상표나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이 등록된 경우, 주지·저명상표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메인 네임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2. 미국판례 분석

미국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표법상의 혼돈가능성과 연방상표회석화방지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cardservice.com 분쟁사례에서와 같이 NSI사의 "first-come, first-served" 원칙을 무

33) 현재 중국인에 의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34) 관련된 홈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하고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

둘째, actmedia.com의 분쟁사례에서와 같이 연방상표회석화방법에 따라 유명상표의 경우에 상표와 관련 없는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표의 희석화를 이유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는 유명상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전자상거래에 있어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셋째, playmen.com의 분쟁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국가에서 다른 언어로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도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whitehouse.com의 분쟁사례에서와 같이 미국내에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상호나 초상이 침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명인사들의 이름도 타인에 의해 도메인으로 등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3. 중재·조정 사례분석(Provider들의 분쟁사례)

도메인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당사자의 해당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한이냐 정당한 권리 여부와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 이들 Provider들의 주 목적이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의 도메인 네임 분쟁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분쟁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iofield.com 분쟁사례에서 처럼 등록된 도메인 네임의 판매를 제시하거나 도메인 경매시장에 등록시키는 것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가격, 최소비용 등을 제시하는 것도 악의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fido.com 사례에서처럼 상대방의 도메인 판매요구에 동의를 하는 경우도 악의적인 의도로 여겨질 수 있다.

둘째, maersksealand.com 분쟁사례에서 처럼 관련 기업의 중요한 사실(예 : 기업간의 합병협상)이 있는 직후의 도메인 등록도 악의로 여겨질 수 있다.

셋째, wheatthins.com의 4개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에서처럼 도메인 네임을 여러 개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도 악의로 여겨질 수 있다.

넷째, icqsms.com 분쟁사례에서처럼 등록시 주요기재사항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DRP는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자가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시적 등록계약서에 성명, 국적, 우편번호, 지역 및 번지수가 포함된 상세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다섯째, telaxis.com 분쟁사례에서처럼 상표권자보다 먼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상당기간 동안 인식되어온 도메인 네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V. 결 론

도메인 네임 분쟁을 기존의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ICANN을 중심으로 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많은 정보가 널리 인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ICANN의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단순히 상표권자가 아니면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오늘날 도메인 네임이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국의 기업들은 도메인 네임 선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의 정책도 자국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의 잇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WIPO의 유명상표보호 권고안의 제시와 유명상표의 회색화 방지를 판정한 잇다른 판례들로 유명상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도메인 네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산·학·연이 함께 도메인네임 분쟁협의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판례와 ICANN의 정책과 분쟁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첫째, 도메인 네임 분쟁 관련 국내법을 신설하여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비하고, 둘째, WIPO에서 유명상표를 지정하여 이를 보호할 예정이므로 국내기업의 많은 상표들이 유명상표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셋째, ICANN Provider에 많은 국내 전문가들을 패널로서 파견하여 국내기업이 도메인 네임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특허청이나 Krnic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ICANN 정책과 규칙에 대한 많은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국내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도메인 네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박종삼, 박영태, "EC시대 인터넷 도메인명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제9권.

윤광훈, 김철호,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춘계 정기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00.

한국전산원,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1998. 4.

2. 외국문헌

David McGuire, "Canada Proposes Domain Dispute Resolution Rules", Newbytes, April

24, 2000.

JOHN BONELLO, "How to protect, defend an Internet domain name", Washington Business Journal, Jan 14, 2000, v.18.

Kim Hoo, "Domain name dispute jeopardizes a young entrepreneur's hopes", Korea Herald, April 20, 2000.

Marc Brown, "Know your rights: Don't pay ransom to a cybersquatter", The Business Journal, March 24, 2000.a.

—————, "Don't pay off a cybersquatter!", Electronic Business, v.26. March 2000.b.

Frances Williams, "Wipo cyber arbitration kicks off to flying star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NLINE SERVICE TO COMBAT 'CYBERSQUATTING' AND SETTLE ROWS GAINS SUCCESS", The Financial Times, Feb 23, 2000.

Steven Bonisteel, "World Wrestling Federation Pins Cybersquatter", News bytes, Jan 17, 2000.

3. 웹사이트

<http://www.icann.org>

<http://www.iana.org>

<http://disputes.nic.or.kr>

<http://arbiter.wipo.int/domains/cases/all.html>

<http://www.eresolution.ca/services/dnd/decisions.htm>

<http://www.arbforum.com>

<http://www.lawkorea.com>

<http://www.domainemart.com>

<http://www.ked.co.kr>

<http://www.kipo.go.kr>

<http://jus.snu.ac.kr/~sjjong>

<http://ipn.amore.co.kr>

<http://engnews.co.kr>

<http://www.yplee.co.kr>

<http://www.howpc.com>